

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(제46조의2제2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
 - 가. 재화중량톤수(여객선 및 로로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)
 - 나.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연속최대출력
 - 다. 기준선속(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속력을 말한다)
 - 라. 연료유의 종류
 - 마. 연료소비율(주기관의 경우에는 연속최대출력의 75%,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연속최대출력의 50%에서의 연료소비율을 말한다)
 - 바. 설계시 하기만재흡수선 조건으로 추정한 출력선도 또는 실제 해상시운전 조건에서 추정한 출력선도(설계단계에서의 출력선도 추정과정 및 방법론을 포함하여야 한다)
- 사. 선박명세서
 - 아. 선박의 종류(별표 20의2에서 정의된 선박의 종류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의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) 및 선박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정보
 - 자. 선급부호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)
 - 차. 선박 추진장치 및 전기공급장치의 개요
 - 카.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저감장치에 관한 서류(에너지저감장치가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)
 - 타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결과
 - 1) 계산에 사용된 매개변수 및 계산과정
 - 2) 날씨보상계수에 대한 정보(날씨보상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결과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)
2. 에너지효율검사증서(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)
3.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
 - 가. 수조시험설비의 개요(설비명, 수조 및 예인장비 명세서와 모니터링장비의 검교정 기록을 포함한다)
 - 나. 수조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선과 실제선박의 선도(모형선과 실선의 유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자료를 말한다)
 - 다. 재화중량톤수의 검증을 위한 선박의 경하중량(사람,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중량) 및 배수량조사표
 - 라. 수조시험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(실제 해상시운전 조건 및 하기만재흡수선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포함한다)
 - 마. 기준선속의 계산 과정에 관한 서류(거칠기 계수, 반류환산계수 등과 같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는 추정 근거를 포함한다)
 - 바. 수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류[동형선(同形船)의 선도와 수조시험 결과, 선박명세서의 비교자료와 수조시험을 생략한 사유에 대한 기술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다]

사. 전력조사표